#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2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이개호・위성곤・김현정

이정문 · 서영교 · 부승찬

정진욱 • 조인철 • 박수현

전진숙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리, 한빛, 한울, 월성은 각각의 원전본부별로 포화상태가 되어 있으나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음.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해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 데 28년이 소요되고, 경수로, 중수로를 불문하고 발생되는 위험성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안전관리사업 등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 안 제143조제2호다목·라목, 제144조제2호다목·라목, 제146조제2항제3호·제4호, 제147조제1항제1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1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원자력발전으로서"를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로서"로 하고, "원자력발전"을 "원자력발전 및 특정자원"으로 한다.

제143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핵연료: 과세기준일 현재 원자력발전 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자
- 라.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사용 후핵연료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자

제144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 핵 연료: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의 소재지
- 라.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 소 소재지

제146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의 1천분의 1 7
- 4.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드럼(200리터 용량의 드럼을 말한다)당 40 만원. 다만, 이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당 2천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 중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제146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2조(과세대상) ① (생 략)	제142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						
	<u> </u>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	②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2						
다음 각 목의 것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원자력발전으로서</u> 대통령	나.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						
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u>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u>						
장에서 " <u>원자력발전</u> "이라	<u>사성폐기물로서</u> 대통령령						
한다)	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 <u>원자력 발전 및</u>						
	<u>특정자원</u> "이라 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	제143조(납세의무자)						
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2						
의 납세의무자 : 다음 각 목							

의 자 가.·나. (생 략) <신 설>

<신 설>

다. (생 략)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부과한다.

- 1. (생략)
-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나. (생 략)

<신 설>

<신 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 핵연료: 과세기준일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후핵 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자

라.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일 현재 원자력발

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외의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자

<u>마</u>. (현행 다목과 같음)

제144조(납세지) -----

\_\_\_\_\_

-----.

- 1. (현행과 같음)
- 2. -----

-----

가. • 나. (현행과 같음)

- 다.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 핵 연료: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의 소재지
- <u>라.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u> <u>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u>

다. (생략)

3. (생략)

-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략)
  -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신 설>

<신 설>

- 3.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 제147조(부과·징수) ① -----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 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와 같다.

있는 발전소 소재지 마. (현행 다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 행과 같음)
  - (2) -----
  - 1. 2. (현행과 같음)
  - 3.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핵연 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 연료의 단위발생량당 소요비 용의 1천분의 17
  - 4.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드럼 (200리터 용량의 드럼을 말한 다)당 40만원. 다만, 이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당 2천원으로 한다.
  - 5. (현행 제3호와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 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 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 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2. · 3. (생략)
- ② ~ ⑧ (생 략)

1.	Ē	事る	성지	-원	분	ス	] 역	ス	-원	[시	설	세
	와	ス	112	163	<b>조</b> 저	]2₹	항ス	13	호	와	4	ই
	에	U	-른	빙	사	성	폐,	7]-	물	케	대	한
	지 '	역 :	자욱	<u></u> 시	설	세	Ц 2	<u>[]</u>				
2.	. 3	3.	(현	행.	과	같	음)	)				

- ② ~ ⑧ (현행과 같음)